의 정 부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9카단201987 채권가압류

채 권 자 재단법인 서능공원묘지운영회

포천시 내촌면 부마로 341 (마명리)

대표자 이사 이해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최윤상

채 무 자 최원류 (671010-1227122)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33번길 26, 552동 302호(정자동, 백설마을성 지,동양고속아파트)

- 제 3 채 무 자 1.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신관) 대표이사 이대후
 - 2.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대표이사 허인
 - 3.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우리은행본점) 대표이사 손태승
 - 4.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 (주)KEB하나은행본점) 대표이사 지성규
 - 5.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대경빌딩 신한은행 본점) 대표이사 진옥동

주 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금100,000,000원(손해배상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청구금액 금 100,000,000 원

이 유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100-000-201903285125호)을 제출받고 또한 담보로 금 20,000,000원을 공탁(2019.07.22, 의정부지법공탁관, 2019금3534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23.

판 사 정윤현



- ※ 1. 이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입니다.
 - 2.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을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100,000,000원

채무자 최원류 (주민등록번호: 671010-1227122)가

1.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20,000,000원
2.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20,000,000원
3.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20,000,000원
4.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20,000,000원
5.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20,000,000워

위 각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으로서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을 제외한다).

다 음

- 1. 압류, 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가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압류한다.
 - ①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 ②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 ① 보통예금 ② 당좌예금 ③ 정기예금 ④ 정기적금 ⑤ 별단예금
 - ⑥ 저축예금 ⑦ MMF ⑧ MMDA ⑨ 적립식펀드예금 ⑩ 신탁예금
 - ① 채권형 예금 ②청약예금
-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가압류이의신청서

채 권 자 재단법인 서능공원묘지운영회

포천시 내촌면 부마로 341

대표자 이사 이해연

채 무 자 최원류(671010-******)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33번길 26, 552-302 (정자동, 백설마을성지,동양고속아

파트)

(휴대전화: 010-3525-**** 이메일: cwr0211@naver.com)

신 청 취 지

-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단201987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19. 7. 23.자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 2. 피신청인의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1. 피신청인(채권자)은 2019. 7. 9. 신청인(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사건번호)를 제기하고 일 방적으로 주장하는 비객관적인 손해액을 마치 채권액인양 비약하여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단201987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신청인(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 2. 그러나 신청인(채무자)은 해당 손해액과는 관련이 없으며, 소송 중인 사건 역시 (사건번호) 언론사인 주식회사 포커스의 언론 보도로 인해 피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일방적 주장을 하는 사건으로 신청인(채무자)과는 다툼의 여지 없이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 3. 또한, 피신청인(채권자)은 확정된 채권액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액을 대략 추산하였을 뿐, 실질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소를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4. 따라서 본 가압류 결정에 관하여 신청인(채무자)은 피신청인(채권자)에 대하여 손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피신청인의 손해액이 정확하게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산출되지도 않았으므로, 본 가압류 결정은 신청인(채무자)에 있어 부당하며, 피신청인(채권자)은 본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사건 당사자인 주식회사 포커스에 신청하였어야 할 것이나, 단지 피신청인(채권자)이 신청인(채무자)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자 함이 명확합니다.
- 5. 이에 신청인(채무자)은 귀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인한 금융거래 중단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사건의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닌 신청인(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집행은 근거가 없으니 본 결정을 취소하여 주시길 간청 드리는 바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을 제1호증

19가단120947_(19.07.09)소장_001001.소장_법무법인(유한) 정진

2. 소을 제2호증

19가단120947 (19.07.29)답변서 003001.답변서 주식회사포커스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2019.08.07

채무자 최원류

의정부지방법원 귀중

<답변서 요약표>

구분	피고의 의견 요약 (해당 란에 ☑ 표시)	
1.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 전부 인정 □ 일부 다툼 (답변의 요지 : ■ 전부 다툼 (답변의 요지 :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화해 ^{1).} 조정 ²⁾	■ 희망함 □ 희망 않음	
3. 소송요건 흠결 유무	□ 관할 위반 주장 □ 이송 신청 □ 기타 소송요건 흠결() ■ 해당 없음	
작성자	2019. 07. 29. 피고 1 주식회사 포커스 (서명 또는 ⑩) 피고 2 최 원 류 (서명 또는 ⑩) (연락처 010-3525-5551)	

※ 이 <답변서 요약표>의 1항 내지 3항의 해당 항목에 ☑ 표시를 한 다음, <u>답변서의 표</u> 지 다음 장(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맨 앞장)에 붙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¹⁾ 소송상 화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호 그 주장을 양보함에 의하여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합니다.

²⁾ 민사조정제도란 민사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가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툼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1회 이상 조정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 변 서

- 사 건 2019가단120947 손해배상(언)
- 원 고 재단법인 서능공원묘지운영위원회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 지 고 1. 주식회사 포커스 2. 최 원 류

위 사건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 아 래 -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1. 당사자들 관계

피고 1은 피고 2가 대표이사로 운영 중인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재 주식회사 포 커스라는 법인으로서 포커스경제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피고 2는 피고 1의 대표이사이자 본 사건으로 인해 발생되는 실익 등과 관계없는 개인일 뿐입니다.

원고는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재 재단법인 서능공원묘지운영회라는 법인으로 광 릉추모공원이라는 상호로 장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

2. 사실 관계

가. 원고의 불법행위에 관한 확증

피고 1은 2019년 5월 경 원고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사실을 인지하고 취재를 하던 중 원고가 경영하고 있는 '광릉추모공원'이 관할관리청인 포천시청에서 주민 민원으로 인한 현장확인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격적으로 이를 취재하여 원고가 산림을 무단 훼손하여 묘지를 불법 조성하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1은 2019년 5월 30일 경 원고의 불법 행위에 관한 고발 기사를 피고 1이 운영중인 인터넷 신문 '포커스경제' 사이트에 업로드해 보도하였습니다.

취재 결과 원고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농지관리법] 등 여러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현재 행정조치 중인 상태이며, 이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인 포천시청의 단속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나. 피고의 보도내용에 관하여

피고1은 포천지역에 연고를 둔 인터넷 언론사로서 그간 지역 내에서 발생한 수많은 불법, 탈법 행위들을 보도하여 왔으며, 지역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명을 다해 언론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본 사건 역시 그러한 피고1의 일반적인 언론사로서의 역할 수행의 하나였으며 포천에서 50여년간 장묘업을 영위해 온 원고의 불법행위를 취재하여 관련된 내용을 신속히보도하여 지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가감 없는 정확한 내용으로 이 사실을 보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 1이 수행중인 지역 언론의 역할은 지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공서 및 사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지역의 피해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임무도 포함되어 있는 바,원고의 불법행위를 신속히 보도하여야 했으며, 오히려 이를 눈 감고 넘어가거나 원고에 유리한 기사를 보도하는 것이 지역 언론으로써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일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3.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들의 입장

가. 인근 토지 소유주들의 알박기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소장에서 '알박기 소유주 등'과 피고1이 결탁하여 "취재를 빙자한 민원을 제기하게 하는 등"이라고 적시하여 마치 피고가 위 '알박기 소유주 등'과 밀접한 유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첫째, 원고 및 그들과 이해관계가 얽힌 소외 손창수, 조효구등은 피고들과 관련이 없으며 기본적으로 본 소송과도 관련 없는 내용임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소외 손창수, 조효구 등이 원고와 분쟁이 있다면 직접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면 될 일이며 이는 지역 언론인 피고1의 역할과 무관하며 피고1이 보도한 기사내용에도 전혀 언급이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장 2-가 항에 적시한 알박기관련 내용 및 토지 매입과 관련된 내용, 이동 등에 방해를 받았다는 내용 등은 피고들,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 간의 본 소송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로써 원고 및 원고측 대리인등이 오히려 피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바, 본 사건에 결코 인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원고는 마치 소외 손창수, 조효구 등이 피고들을 동원하여 '취재를 빙자한 민원을 제기하게' 하였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피고1은 상기하였듯 지역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 등을 감시하고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사이며, 원고가 말하는 '민원'이라 함은 피해를 받은 주민이 직접 해당 관할 관청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위로써 두 행위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을 뿐더러, 실제로 피고들은 관할 관청인 포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원고는 갑제 6호증을 제시하며 마치 피고1이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해당 공문은 분명 언론사로써 취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이었으며, 이 역시 애당초 원고들이 피고1의 취재에 협조하였다면 발송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포천시청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원고들에 행정적 조치를 취한 것은 해당 건에 대해 단속을 할지 말지에 대한 포천시

청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므로 피고1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관할 관청의 통상 업무 단계를 생략한 논리적 억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은 원고 창업자 가족과 위 '알박기 소유주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바이며, "관련 내용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소의 이익수와 피고 간에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이를 소장에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복잡한 내부관계의 치부만을 드러낸 결과이며 오히려 원고조차도 '추정'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바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여 피고를 본 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원고는 애당초 성립되지 않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단순히 본인들의 치부를 보도한 피고들을 '괘씸'하게 여겨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들은 원고 및 기타 이해관계 자 등의 관계적 치부 및 기타 사적인 내용들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고 굳이 소송을 통 해 알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원고야말로 평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지역 언론으로서 의 본분에 최선을 다 하는 피고를 괴롭히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 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수 십 여년만에 밝혀진 광릉추모공원 불법'이라는 기사 제목과 일부 기사 문구 등을 거론하면서 마치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원고는 아직 원고의 '불법여부가 사법기관에서 전혀 판단되지 않았고, 관할관청의 조사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변하며 이를 불법행위인 것처럼 보도한 피고1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지

만, 과연 그렇다면 피고1의 원고에 대한 명예 훼손 여부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완료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원고는 본인들의 행위가 사법기관의 판단이 완료되지 않아 '아 직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1이 원래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언론'의 역할 을 수행한 것을 두고는 사법기관의 판단도 없이 '명예 훼손'이라며 심지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 과연 논리적인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고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피고의 행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법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본 소에서 입증 책임이 있는 원고는 이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고는 판례를 인용하기에 앞서 반드시 피고1의 보도가 자신들이 인용한 판례에 비추어 1)공공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 2)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지 여부, 3)기사에 보도한 원고의 행위와 그와 관련하여 피고1이 인용한 각종 법률 근거가 허위인지 여부, 4)피고1이 기사 작성을 위해 포천시청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 등이 허위인지 여부 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원고의 입증 책임을 다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단순히 판례 복사본, 피고1의 기사, 피고1의 포천시청 취재협조 요청 공문을 증거로 제시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셋째, 원고는 소장 5페이지에서 피고2를 '민원 당사자'로 적시하고 있으나, 피고2는 원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포천시청에 접수한 사실이 없으며(이는 포천시청에 사실조회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단순히 피고들을 괴롭히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넷째, 원고는 또한 소장 5페이지에서 '피고들의 이사건 기사내용 중......(중략).......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연결지은 마명리 산 67번지 및 산 69번지 공사와는 아무 런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피고1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피고1 은 작성한 기사(갑 제 5호증)에서 분명히 '이와관련 광릉추모공원 관계자는......(중 략)......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라고 원고의 의견을 명시함으로써 객관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는바. 원고가 판례를 근거로 제기한 불법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이 사건이 "불법여부가 사법기관에서 전혀 판단되지 않았고, 지자체(포천시, 경기도)의 관련 사실에 관한 조사결과조차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예상컨대 본 소가 진행되는 중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본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바, 이 후 재판장님께서는 포천시청 및 사법관청에 사실조회 등을 통해 반드시 원고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 유지이자 대형 업체인 원고가 또 다른 불법행위를 통해 해당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광고비 지출 지출에 대한 피고의 입장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원고는 지난 50여년간을 포천시 내촌면에서 장묘사업을 하면서 "유명인사들, 정계, 재계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인사들의 가족묘로 선택받는 등" 명성을 유지해온 업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원고는 위여러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관할행정청의 단속의 대상이 되어 그 처분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원고는 그 법인의 성격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입니다. 그러한 비영리법인이 수십년간 장묘사업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소에서 스스로 입증한 각종 광고비 등의 제출 자료가 그 근거인 것입니다.

결국 원고의 주장처럼 "한달에 5,000만원씩 광고료를 지출"하면서 50년간 사용하던 토지가 수용 한계에 이르자 결국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범위를 확장하고자

했던 결과, 그 무리수가 지역에서 주민들과의 분쟁에 이르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원고의 명성에 스스로 누를 끼치게 된 것으로 피고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소는 50년간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원고가 피고1의 보도를 통해 불법 행위가 드러나자 소송을 통해 언론의 입을 막으려 하였으나, 결국 재단법인인 자 신들의 부와 명예를 자랑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2) 원고의 광고비 지출과 피고1 보도의 상관관계

피고1의 보도가 업로드 되고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을 우려한 원고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6월 13일 송달하였습니다. 피고1은 비록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원고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것이 두려웠고, 장고 끝에 부득이 위 기사를 삭제하였습니다. [을 제1호증 내용증명]

피고1은 지역 언론으로서 여러 종류의 기사를 다루는데 이 중 사회 고발성 기사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1이 다루는 고발성 기사는 주로 피고1이 주재하고 있는 포천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구독자 또한 주로 포천시민들과 유관 기관입니다.

서울 및 경기권, 나아가 전국 단위로 광고비를 연간 무려 수억원을 지출하는 원고의 광고 대상이 포천 지역민 일부 등이 보는 피고1의 기사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어그 손해를 피고1의 기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지 원고는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통상손해액과 특별손해액에 대한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2019년 5월 30일부터 기사

를 삭제한 6월 13일까지 14일 동안 원고의 매출이 금 일억원이상 감소되었는지, 아니면 향후 매출이 감소에 대한 구체적 근거 등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이 소를 제기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제목이 무색할 정도이며, 혹여 더 이상 원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소를 통하여 피고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고가활용할 목적이라면 이는 재판부를 기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피고2에 대한 소송 제기 여부의 타당성

원고는 본 소송을 피고1과 피고2를 상대로 제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임의로 산정한 손해액을 피고2의 개인 재산을 상대로 가압류까지 한 상태입니다. 본 소송사건에 있어 피고2 최원류는 주식회사 포커스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운영중인 언론사포커스 경제에 대한 취재를 하였고, 갑제 6호증 역시 회사 명의로 발송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2를 본 소송건에 끌어들인 이유는 단지 피고2의 개인 재산을 가압류하여 각종 금융거래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해 소송 및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매우 악의적인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이미 본 소송건에서 피고1이 피고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피고1이 본 사건에 있어서 한 역할 등에 피고2가 누군가로부터 원고료, 알선료 등을 수취하는 등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2는 본 소송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는 원고에게 피고2에 대한 가압류를 즉시 취소하고 본 소에서 피고2를 제외하는 것으로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손해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 입증 근거 없이 원고 임의대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피고2의 개인 계좌를 가압류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억울한 개인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 소 결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원고는 지역민들과의 분쟁이 발생할 정도로 무리한 사업 확장을 꾀하려다가 결국 행정청의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되면서 이를 보도하기에 이르자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갑제 1호증 판례에 명시된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형법 상 명예훼손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민사적 배상과 연관지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 제시가 원고로부터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원고가 제기한 본 소송은 성립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또, 원고의 특성상 비영리를 추구하는 재단법인이 어떠한 근거로 금 일억원의 손해를 보았는지, 최근 수년간의 영업자료 상 매출의 증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인 보도를 하여 매출에 심각한 훼손이 있었는지에 대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를 원고 스스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수반되어야, '손해배상'이 성립될 것입니다. 과연 원고의 손해액이 금 일억원에 해당하는지, 향후 이를 확장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출을 재판부에서 명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포천시 내촌면에서 오랫동안 업을 유지한 원고는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이러한 지역 유지와도 같은 원고의 불법 사실을 지역민의 알권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 언론으로서 피고1은 이를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1의 보도내용은모두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객관적 사실관계만을 적시하여 보도하였는바, 피고1은 언론으로써 이를 보도함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피고1의 입을 막기 위하여 2019년 6월 11일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겁박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피고1은 이에 부담을 느껴 기사를 곧바로 삭제하였으며, 피고1의 기사와 관계없이 포천시에서는 원고의 불법성을 사전 인지하고 현재 행정처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2는 본 사건과 법리적 관계가 없으며, 다만 원고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주고자 억지로 본 소송에 끼워 넣은 바, 현재도 계좌 가압류로 인해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등 매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보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결 어

피고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본 소에 임하고자 하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이며, 특히, 피고들은 영세사업자 및 개인으로 본 소송에 당해 많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소의 조속한 진행을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내용증명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019년 7월 29일

위 피고 1. 주식회사 포커스 (인)

피고 2. 최 원 류 (인)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3 2 민 사 단 독 귀 중



포 천 시



수신 의정부지방법원(제32민사단독 재판부) (경유)

제목 사실조회 회신(2019가단120947)

사건번호 2019가단120947(손해배상)호 사실조회서 관련 아래사항을 회신합니다.

- □ 회신내용
- 1. 광릉추모공원에 대해 단속한 사실
- ▶ 단속한 사실 있음(붙임1. 관련공문)
- 2. 위법사항 적발 여부
- ▶ 비허가지역에 조성된 불법묘지 104기 적발
- 3. 행정처분 여부
- ▶ 조성된 불법묘지에 대해행정처분(이전명령) 사전 통지함(붙임2. 행정처분 사전통지)
- 4. 광릉추모공원 현장확인 등의 계기
- ▶ 광릉추모공원 묘지허가 지번 내 **옹벽공사에** 대한 마을이장의 민원제기로 현장 확인함
- 붙임 1. 관련공문 1부.
 - 2. 행정처분 사전통지 1부. 끝.

포 천



주무관장묘문화팀장노인장애인과2019.8.7.조창훈송민수장이일선

협조자

시행 노인장애인과-24181 (2019. 8. 7.) 접수

우 11146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87, (신읍동) (신읍동) / www.pocheon.go.kr

전화번호 031-538-2269 팩스번호 031-538-2775 / ckdgns4813@korea.kr / 비공개(4)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

소 장

원 고 재단법인 서능공원묘지운영회

포천시 내촌면 부마로 341 (마명리)

대표자 이사 이해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20층 (서초동, 강남빌딩)

담당변호사: 최윤상

(전화: 02-592-2224 휴대전화: 010-2430-****

이메일: jungjinllc@hanmail.net)

피 고

주식회사 포커스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2536번길 22-5 (소학리)

기타 사내이사 최원류

2. 최원류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33번길 26, 552동 302호(정자동, 백설마을성지,동양고속아파트)

손해배상(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 재단법인 서능공원묘지운영회는 1969년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1970년 정부로부터 약 25만 평의 부지에 대하여 묘지설치허가를 받아 약 50여 년 동안 포천시 내촌면 소재 광릉추모공원의 유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법인입니다(갑제1호중 법인등기부등본, 갑제2호증 사설묘지설치허가증).

피고 주식회사 포커스는 포천 일대의 지역언론으로 일간 및 주간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인터넷신문사업(http://www.gungsireong.com/), 및 간판등 광고대행 업, 판촉물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최원류는 위 주식회사 포커스의 사내이사이자 편집인·발행인·기자인 자입니다(갑제3호증의1 주식회사 포코스 법인등기부등본, 갑제3호증2 최원류 명함 앞, 뒷면).

2. 이 사건의 배경

가. 최근 광릉추모공원 인근 토지 소유주들의 소위 알박기에 관하여

원고가 운영 중인 사설묘지공원인 광릉추모공원 인근 토지인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253-2, 253-3, 252-14 필지의 소유주 소외 손창수, 조효구는 최근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토지들을 터무니 없는 가격에 <u>재매입하라고 요구</u>를 하고 있습니다.



소외 손창수, 조효구는 2006년 12월 경 원고의 창업자인 박도규의 손자 박성진이 박도규로부터 상속받은 위 토지들을 원고 집안의 가정 내 분란을 기화로 약 4억 원 상당의 가격으로 매입하였습니다(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러나 이 땅은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없는 맹지입니다.

손창수, 조효구는 토지를 매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위 토지를 5배가 넘는 가격인 약 20억 원에 상당의 가격(공시지가로는 약16배가 넘습니다)으로 다시 매수해가라고 요청하면서, 매수요청을 원고가 가격이 안 맞아 거부하자 최근 1970년경부터 현재까지 광릉추모공원 내 성묘객의 주요 이동통로(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위 253-2 토지상의 이동을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에 우회로를 개설하고 그리로 통행을 하자 평소 지역에서 친분이 있는 피고를 동원하여 취재를 빙자한 민원을 제기하게 하는 등 원고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일련의 행동의 배후에는 이 지역의 유지인 소외 이익수라는 자가 관련 내용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하 손창수, 조효구, 이익수를 통칭하여 '알박기 소유주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나. 피고 최원류의 포천시청에 대한 무분별한 민원 제기 및 피고들의 허위사실에 터 잡은 부정적인 보도

피고 최원류는 2019. 5. 30.경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지방지¹⁾ 피고 주식회사 포커스의 인터넷 사이트(http://www.gungsireong.com/에 「수 십 여 년만에 밝혀

¹⁾ 사실상 1인 기자인 지방인터넷언론이고 갑제3호증 2 명함과 갑제3호증의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간판업, 판촉물 도소매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진 광릉추모공원 불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합니다)를 업로드하였습니다(갑제5호증 포커스경제 인터넷기사내용).

알박기 소유주 등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평소에 친분이 있던 지역 간판 및 광고대행업자인인 피고 2. 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원고에게 부정적으로 보도되게 하는 동시에 언론보도에 취약한 포천시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원고를 압박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행하였습니다.

3.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가. 관련 법리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민사상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는 동시에,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 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 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나. 피고들의 불법행위

피고 최원류는 위 2.의 나.항 기재내용과 같이, 2019. 5. 30.경 자신이 사내이사 로 있는 지방 언론매체인 피고 주식회사 포커스의 인터넷 사이트 (http://www.gungsireong.com/에 「수 십 여 년만에 밝혀진 광릉추모공원 불법」 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 기사(갑 제5호증)를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 1) 이 사건 기사의 제목2)은 「수 십 여 년 만에 밝혀진 광릉추모공원 불법」입니다. 2)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추모공원 관 리 및 운영에 관하여 불법여부가 사법기관에서 전혀 판단되지 않았고, 지자체 (포천시, 경기도)의 관련 사실에 관한 조사결과조차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되었습니다. 3) 피고 최원류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기자인 동시에 피고 주식회사 포커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편집인·발행인을 겸하고 있는 자입니 다. 문제가 된 기사에는 " 그 동안 각종 공격으로부터 수비수를 자처했던 주민

2) 통상의 독자들은 보도의 제목만으로 그 관련 사실관계를 짐작하고 심지어 전체의 내용을 추단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들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격수로 돌아섰다"고 기사를 써서 마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처럼 썻으나 실제 포천시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포처시청 산하 각 부서에 지속적으로 수 건의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주민들이 아닌 일부 주민(소외 손창수, 조효구, 이익수)의 이해관계에 편승한 피고 2. 최 <u>원류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피고2가 바로</u> 민원 당사자³⁾인 것입니다**(갑** 제6호증 포천시 제출한 포커스경제 공문). 4)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 「각종 불법, 마구잡이식 훼손, 각종 불법과 꼼수, 주민들을 더욱 격앙시키고 있다」등 원고에 대하여 원색적인 부정적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내용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상 변경신고를 통한 연장허가 및 분 묘의 설치기간(30년)에 관한 내용'은 법률 제13660호로 2015. 12. 29. 개정된 내용으로 개정 이전의 매장묘에 한하여 적용되는 내용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연결지은 마명리 산 67번지 및 산 69번지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 습니다. 6) 이 사건 기사는 위 2) 기재내용과 같이 아무런 공식적인 사실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사실이 대단히 단 정적ㆍ확정적인 내용인 것처럼 보도되는 등 허위의 사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 니다.

다. 소 결

이상의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을 접하는 일반 독자로서는 마치 원고 재단이 추모공원의 운영에 관하여 수십 여 년 동안이나 불법행위를

3) 피고 최원류는 마치 자신은 소외 이익수의 제보를 받아서 이 사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주 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다수의 포천시청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민원 제기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당사자인 피고 2. 최원류입니다.



저질렀음에도 이를 감추어 왔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최근에 밝혀졌다고 생각할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로서는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편견을 갖게될 것임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4.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

원고는 1970년 당시 보건사회부 허가로 사설묘지업 허가를 받아 모범적으로 사설묘지를 운영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홀대받기도 하였던 사설묘지사업을 50여 년 동안이나 묵묵히 운영하여 왔습니다(갑제2호중 사설묘지설치허가중). 원고는 정부 및 지자체(경기도, 포천시)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묘지사업을 시작하던 1960년대 부터 관련 지자체의 협조요청에 최대한 협조하는 동시에 인·허가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추모공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원고는 서울에서 가까운 입지적인조건과 주변에 광릉수목원등 훌륭한 자연경관과 원고 공원묘지 내부의 울창한숲 조성등 훌륭한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유명인사들, 정계, 재계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인사들의 가족묘로 선택을 받는 등 '프리미엄급 공원묘원'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설립 5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영상홍보 및 라디오 광고 등을 하여 대외적인 이미지 부각에 큰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갑제7호증 광릉추 모공원 50주년 홍보물). 원고는 서울과 경기지역 케이블TV 광고에만 한 달에 5,000만원씩 광고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갑제8호증 광릉추모공원 CATV SO광



고 큐시트).

그런데 일부 특정인들(알박기 소유주 등과 피고들)만의 이해관계를 위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거액의 광고비를 지출하면서도 그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을 물론 합법적인 운영의합법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당한 인적·물적 자원을 쏟는 등 그 <u>물적·대외적</u>신용상 피해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에 원고는 일단 금1억원을 청구하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실 손해부분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언론이나 온라인 게시글을 통한 명예나 인격권의 훼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 사이에 형성된 부정적 인식은 쉽게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원고는 견제받지 않는 언론의 권한을 남용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불법적인 보도를 일삼는 일부 지방 언론들의 위법한 보도관행에 관하여 경종을 울리고 원고가 입은 피해를 보전받기 위하여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5. 결 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오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재단법인 서능공원묘지 운영회)

2. 갑 제2호증 사설묘지설치허가증

3. 갑 제3호증의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포커스)

4. 갑 제3호증의 2 최원류 명함 앞,뒷면

5. 갑 제4호증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마명리 253-2)

6. 갑 제4호증의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마명리 253-3)

7. 갑 제4호증의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마명리 253-14)

8. 갑 제5호증 포커스경제 인터넷기사내용

9. 갑 제6호증 포천시에 제출한 포커스경제 공문

10. 갑 제7호증 광릉추모공원 50주년 홍보물

11. 갑 제8호증 광릉추모공원 CATV SO광고 큐시트

첨 부 서 류

- 1. 참고자료 판결서(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 2.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2019.07.09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최윤상

의정부지방법원 귀중